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

상정·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선교의원)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안 제46조의3제2항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68조제1항제3호에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중 고령자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